

창원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가단1090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버리

담당변호사 김인중, 김지영, 이수정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강병철, 김주엽, 정재훈

변 론 종 결 2020. 1. 14.

판 결 선 고 2020.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91,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고속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전신주 이설요청 및 도로점용허가

- 1) 원고는 2009. 4. 2. 피고에게 A 확장공사(제1공구)와 관련하여 구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도로법 제90조 제2항)를 근거로 전신주 181주에 대한 이설요청을 하였다.
- 2) 이에 피고는 2011. 11.경 원고에게 위 전신주 이전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1. 29. 피고에게, “점용시설 전력관로 9공(d=175mm, L=145m), 점용기간 2011. 11. 28.부터 2021. 11. 27.까지 10년, 점용료는 5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갑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하고, 피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전력관로 및 맨홀을 ‘이 사건 공공지장물’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다. 이 사건 공공지장물에 대한 이설요청 및 이설비용 지출

- 1) 원고는 2017. 9.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위 고속도로확장공사 구간 중 C 하부 배수시설인 Y4개거(이하 ‘Y4개거’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하였고, B은 2018. 4. 10. 원고에게 Y4개거의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공공지장물의 이설조치를 요청하였다.
- 2)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피고 비용으로 이 사건 공공지장물을 이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공지장물의 이설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함으로써 원고의 요청에 불응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공지장물 이설공사비 51,391,42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공지장물의 이설공사를 완공하였다(갑 제6호증, 계정원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부당이득, 비진의 의사표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공지장물을 설치하였고, 원고로부터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를 50% 감면받았으므로, 도로법 제9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공지장물의 이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참조).

그런데 A 확장공사 당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Y4개거를 신속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공공지장물 이설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 피고에게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공공지장물을 이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시급한 이설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가 이설비용 51,391,420원을 선부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부담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이라 한다)에 날인을 요구하면서 날인을 하지 아니하면 이설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을 제1호증에 부득이 날인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던 만큼,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공지장물 이설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하였어야 할 위 이설비용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Y4개거 설치공사는 원고와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B이 공사를 누락하여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원인자인 B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등 참조), ② 이에 피고는 2018. 9.경 원고와 이 사건 공공지장물 이설에 관하여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도로법 제90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적용법리 및 판단

가. 적용법리

도로법 제90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도로법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 또는 통신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개별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협약에 따라 비용의 부담자가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3. 22. 선고 2010나878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9.경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공지장물 이설에 관한 공사비용을 산정하면 원고가 위 부담금을 2018. 10. 1.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 그 후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공지장물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공지장물 이설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 2개월 후인 2018. 11. 14. 피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

관련 법령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접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접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접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